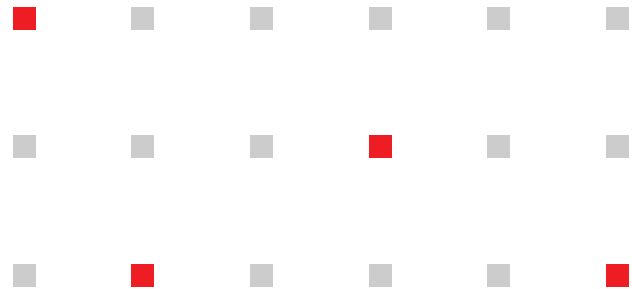




명예도로 지정으로 기업유인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연구진 이창현 연구위원
hyun@jd.re.kr

- 제1장 | 명예도로의 근거와 의미
- 제2장 | 명예도로 지정은 왜 필요한가?
- 제3장 | 명예도로 관련 국내·외 동향
- 제4장 | 전라북도 명예도로 지정가능성 진단
- 제5장 | 명예도로 지정 및 효과 제고방안



Issue Briefing

명예도로 지정으로
기업유인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Contents

1. 명예도로의 근거와 의미 3
2. 명예도로 지정은 왜 필요한가? 5
3. 명예도로 관련 국내·외 동향 6
4. 전라북도 명예도로 지정가능성 진단 10
5. 명예도로 지정 및 효과 제고방안 14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0년 9월 6일 제3호 |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TEL.063-280-7100 FAX.063-286-9206

Issue Brie



제1장

명예도로의 근거와 의미

1. 명예도로란?

- 근거법 :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부여 등)(2009년 7월 개정)
- 시장 등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기존 부여된 도로명 외에 명예도로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따라서 명예도로는 필요에 따라 일반도로명과 병행명기 사용
- 아울러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이 우수한 사람의 이름 등을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 등은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함
 - 생존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 사용은 불가
 - 기업의 존폐 등 변화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영구적인 법적 주소용 도로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명예도로명으로 사용케 하는 현실적 방안 적용 중
- 명예도로는 주소로는 쓸 수 없지만 지도나 행사, 홍보에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역의 장소성 확보에 기여
-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 안내도에 법정 도로명과 함께 표시되며, 해당 지역에 별도의 표지판도 설치가능
- 명예도로명은 가급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정되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남발되지 않는 수준에서 지정됨

〈표 1〉 명예도로 법적 근거

■ 도로명주소법

○ 제8조의2(명예도로명)

- ① 시장 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도로명 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4.1]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 제11조의5(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

- ① 시장 등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이조에서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4.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의 적합성에 관한 시장 등의 의견
 5. 명예도로명의 부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계획
 6.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 등은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그 이름이 명예도로명을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이 우수한 지 고려할 것
 2.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3.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고시된 후 변경·폐지된 도로명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 ③ 시장 등은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7. 11]



제2장

명예도로 지정은 왜 필요한가?

- 지역도로를 산업자원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전라북도 입주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명예도로(일명, 기업도로)로 지정하게 되면 지역도로를 산업자원화 하는 계기가 됨
- 지역경제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발휘 계기가 되어야 함
 - 입주기업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 투자유치의 우호적 환경 조성, 기업홍보를 통한 기업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명예도로 지정은 필요함
-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사업과 직결되며, 관련 법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
 -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명예도로 부여절차와 원칙, 운용방법 등이 명확히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야 함
- 전북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북출신 역사적·세계적 인물을 홍보하는 전북의 자존심 지키기와 직결되는 사업임
 - 산업 관련 기업체 명예도로 지정 외에도 명예도로는 전북지역(특히 해당 시·군지역 - 명예도로 심의권한은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 낳은 전국적·세계적 인물을 전북을 찾아 온 방문객에게 홍보하는 지역의 문화적 자존심을 세우는 전북 지키기 사업과 직결됨
 - 전북의 자존심 지키기 사업은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의 노력은 물론 지역내 주요 단체의 지정을 위한 적극적 요구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타 지역의 경우 이와 같은 관심과 요구로 지정이 결실을 맺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제3장

명예도로 관련 국내·외 동향

1. 기업(국내사례)

- ● 전라북도 외 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기업도로명(현, 명예도로명 - 수원, 창원, 울산, 광주, 파주 등)을 지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표 2〉 투자기업 명예도로 예시(국내)

시군구	도로명	제원	기업	비고(위치, 주변현황)
부산시	경륜(공원로)	L=300m B=25m	부산경륜공단	지정시기(2008.8) / 경륜교 (그 지역의 존재하는 경륜공단 : 창원, 광명지역 은 미 지정 상태)
수원시	삼성로	L=3.0km	삼성전자	수원 삼성전자~수원C
광주시	삼성로	L=4.8km	삼성전자	광주시 삼성전자 공장주변
창원시	두산·볼보로	L=3.0km	두산	창원시 적현로~양곡동
울산시	아산로	L=4.92km	현대자동차	(울산 북구 명촌동 현대차 부근)
파주시	LG로	L=5.9km	LG필립스	군도3호선, 파주 LG필립스 진입도로



〈그림 1〉 부산시 경륜로 지정사례



- ●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명예도로명 지정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홍보방안 모색차원에서 해당 기업 입주 유인책의 일환으로 기업 진입도로에 대해 신규개설 또는 도로용량 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매칭하여 지원한 사례들도 있음
 - 경기도 시·군지역의 경우 기업명을 명예도로명으로 지정한 사례 외에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난 5년간 총 20건에 연장길이 32.91km의 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1개 사업당 평균 1,646km의 연장길이 규모. 총사업비는 1,37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가운데 도비는 58.9%에 해당되는 810억원, 시·군비 41.1%에 해당되는 565억원이 각각 투자된 바 있음

〈표 3〉 기업진입도로 개설사례(경기도 : 2003.1~2007.12)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계	도비	시·군비
	계	20개소(32.91km)		1,374.1	809.5	564.6
1	용인 델파이사진입도로 개설	L=0.95km, B=12m	'03.10~'04. 7	10	10	-
2	경부고속도로 기흥TG 확장	출구 2차로 설치	'04. 3~'04. 7	-	-	-
3	화성 현대기술 연구소 진입도로개설	L=2.96km, B=11m	'03. 6~'04.10	82	40	42
4	화성 팔탄공장 진입도로 개설(1공구) (15업체)	L=0.90km, B=11m	'04. 6~'05.3	42	21	21
5	김포 한국셀마스타 진입도로 개설 (46업체)	L=1.20km, B=10m	'04. 8~'05. 6	50	27.5	22.5
6	안성 승두리일원 기업체 진입도로개설 (12업체)	L=1.44km, B=10m	'05. 2~'05. 7	43	28.5	14.5
7	안성 용두리일원 기업체 진입도로개설 (53업체)	L=1.88km, B=10m	'04. 11~'05.10	46	29	17
8	이천 씨멘스 오토 모티브(주)진입개설	L=0.74km, B=12m	'05. 2~'06. 3	27.6	16.56	11.04
9	김포 팽택공장 진입 도로 개설 22업체)	L=0.28km, B=11m	'05. 6~'06. 4	11.5	8	3.5
10	양주 상수리,경신리 도로확포장 공사 (39업체)	L=2.4km, B=5~6m	'05. 5~'06. 5	9.5	5.7	3.8
11	화성 팔탄공장 진입 도로개설(2공구) (15업체)	L=0.70km, B=11m	'05. 5~'06. 3	36	21	15
12	용인 아미텔공장진입도로개설(1공구) (1업체)	L=0.51km, B=8m	'05. 5~'06. 5	30	15	15
13	팽택 국도1호선·진위산업단지도로개설 (LG전자)	L=1.3km, B=20m	'04. 12~'06. 4	120	84	36
14	팽택 수월암리 공장진입도로 개설 (71업체)	L=3.05km, B=10m	'05. 1~'06. 6	88	52.8	35.2
15	용인 남사면 공장진입도로 개설 (44업체)	L=2.50km, B=20m	'05. 1~'07.12	177	88.5	88.5
16	화성 기아자동차 진입도로 개설 (160업체)	L=2.30km, B=10m	'05. 12~'07.4	80	40	40
17	김포 (주)코반 공장 진입도로 개설(1단계) (25업체)	L=0.3km, B= 8m	'06. 2~'06. 6	11.5	6.90	4.6
18	김포 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1업체)	L=2.2km, B=15m	'06. 2~'07.12	200	100	100
19	화성 현대 기술연구소 진입도로(시도3호선)개설 (67업체)	L=6.3km, B=11m	'05. 1~'07.12	190	85	85
20	화성 지방도 318호선(기숙사)도로확포장 공사 (10업체)	L=1.0km, B=20m	'06. 2~'06.12	120	120	0

- 이를 통해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신규 공장 추가 건설이 이루어지는 사례존재. 또한 기업은 물류비 절감과 불량률 감소로 인해 수출 증대 등을 가져와 지역 고용창출과 경제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기업이 자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예도로 지정 이외에 기업의 진입로 개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진출입 도로의 확포장을 통해 기업활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실행한 경우
 - 전통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로 인식되어온 부문이지만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를 강조하는 감동 정책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전라북도의 경우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으며, 더욱이 적극적인 유인책 차원에서 이 전기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제공된 사례 또한 전무한 실정임

2. 기업(국외사례)

- 국외 지역에서 국내 투자기업명을 붙인 도로명 부여(지정) 사례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에 존재함. 이들 지정사례는 국내 우수기업의 자국 투자에 대한 지원적 차원에서 거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것임

〈표 4〉 투자기업 명예도로 예시(국외)

국가	도로명	제원	기업	비고(위치, 주변현황)
미국	삼성로	-	삼성전자	미 텍사스주 오스틴 삼성전자 부근
UAE	삼성교	-	삼성전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미국	현대로	L=4.0km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베리시 현대차 공장앞
중국	LG로	-	LG	중국 후이저우시
러시아	LG교	-	LG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부근
베트남	LG교	-	LG	베트남 하노이시대
폴란드	LG거리, LG타운	-	LG	폴란드 모와바시
미국	SKC로	-	SKC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 교외 SKC 공장 진입도로



3. 인물·유물·기타

- 인물, 유형문화재,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명예도로 지정을 위한 노력과 요구사례 및 논의 사례가 상당 수 존재함
- 실제 명예도로 지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으나 그 가운데 일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인물·유형문화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도로 지정 예시

시군구	(명예)도로명	지정시기	제원	출처	비고(주변현황)
수원시	통탄지성로	2008.12	L=1,300m	축구선수(박지성)	지성공원, 지성유포터, 지성 유치원, 박지성축구센터 등
서울시	도산대로	-	-	도산 안창호	도산대로 사거리
청주시	직지로	-	-	직지심경 (금속활자인쇄본)	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문화특구
서울시	명동길 (유네스코길)	-	L=533m, B=15m	유네스코 가입 60주년	유네스코 이름이 들어간 최초도로명



〈그림 2〉 수원시 통탄 지성로 지정사례

제4장

전라북도 명예도로 지정가능성 진단

- 전라북도의 경우 현행의 보조금 지원외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모색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정의된 대규모 투자기업 수준을 설정하고 신규투자 및 이전기업 중심의 기업도모명을 지정하여 기업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업명을 명예도로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기여도와 인지도, 윤리성(지역의 기업의 투자규모, 지역 전략산업과의 관계 등) 등을 기준으로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가능

1. 기업

- 민선 5기 주요 트렌드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표 성격인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전북지역 입주기업가운데 50인 이상 유치기업들의 기업체당 평균 고용계획은 약 260명임
 - 2006년 이후 50인 이상 유치기업 100개 업체가운데 고용계획 500인 이상인 11개 사업체의 고용계획은 전체 고용계획(26,191명)의 59.7%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임

〈표 6〉 500인 이상 고용기업

소재지	업체명	생산물	투자예정액(억원)	추진상황	고용계획	'10채용규모(인)
군산(군장국가)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선박	12,000	가동	8,400	-
군산	OCI	폴리실리콘	23,500	가동	2,500	400
군산(군장국가)	레드라이온	가스화플랜트	450	설계	600	50
전주(전주과학)	솔라월드코리아	박막형태양전지	4,000	가동	600	100
군산(군장국가)	덕신하우징	철강재	450	준비	540	-
임실(농공단지)	일진경금속	정밀튜브	1,420	준비	500	180
군산(군장국가)	대륜중공업(주)	선박블럭	500	가동	500	10
군산(군장국가)	제이와이중공업	레저선박	400	가동	500	5
군산(군산국가)	현대중공업풍력발전	터빈발전기	1,057	가동	500	40
전주(전주과학)	알티솔라	박막형전지	2,800	가동	500	60
익산(익산국가)	넥솔론	잉곳	4,000	가동	500	100

- 따라서 500인 이상 기업을 1차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상징적 차원에서 1,000인 이상 고용계획을 가져 고용창출된(될) 기업 2개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기업명을 탄 명예도로화 적용이 가능
- 기업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의하면 3단계로 구분(전라북도 :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타 광역자치단체 유사)되어 있어 1차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1,0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전북지역 신규 입주기업의 경우 1,000억원 이상 투자기업이 2006년 이후 10개 업체가 해당. 그러나 상징적 차원에서 1조원 이상 투자된(될) 기업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명을 탄 명예도로화 우선 적용을 적극 고려 필요

〈표 7〉 1,000억원 이상 투자기업

소재지	업체명	생산품	투자예정액(억원)	추진상황	고용계획	'10채용규모(인)
군산	OCI	폴리실리콘	23,500	가동	2,500	400
군산(군장국가)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선박	12,000	가동	8,400	-
익산(익산국가)	넥솔론	잉곳	4,000	가동	500	100
전주(전주과학)	솔라월드코리아	박막형태양전지	4,000	가동	600	100
전주(전주과학)	알티솔라	박막형전지	2,800	가동	500	60
군산(자유무역)	삼양이노켄	비스페놀에이	2,000	설계	100	-
군산(군산국가)	세아베스틸	대형단조	2,000	준비	300	26
임실(농공단지)	일진경금속	정밀튜브	1,420	준비	500	180
군산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 장비 등	1,140	가동	250	-
군산(군산국가)	현대중공업풍력발전	터빈발전기	1,057	가동	500	40

〈표 8〉 기업유치 실적

구	분	2003~2006		2006~2009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기업유치	계	개	1,245	100	1,510	100
	이전기업	개	166	12.4	386	25.6
	창업기업	개	1,079	87.6	1,124	74.4
	투자액	억원	37,803		86,992	
	종업원수	명	32,462		55,223	
외자유치	업체수	개	5		17	
	투자액	천불	38,053		721,971	
이전기업 대비보조금	계	개/ 억원	16/108		37/373	
	이전보조금		16/108		31/364	97.5
	고용보조금				6/9	2.5

- ●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기업을 기준으로 투자규모 1,000억이상인면서 고용규모 500명이상인 기업을 명예도로 지정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군별 지역의 전략산업과의 연관성, 지역 입주기업의 규모 경향 등 여건을 종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2. 우호·자매결연 지역

- ● 도로명주소법상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전라북도의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 현황은 3개국(일본, 중국, 미국) 8개 지역이 해당됨
 - 아울러 도내 14개 시·군은 39개 도시와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 상태로, 최소 1개 지역(진안, 무주, 순창, 고창, 부안)부터 최대 11개 지역시(군산)까지 분포하는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9〉 전라북도 및 시·군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 현황(2010.8월 현재)

구분	국가명	도시명	결연일자	비고
전라북도 (3개국 8개도시)	일본	가고시마현	1989.10.30	우호협력
	중국	강소성	1994.10.27	자매결연
	미국	워싱턴주	1996. 5.17	자매결연
	미국	뉴저지주	2000. 5.19	자매결연
	일본	이시가와현	2001. 9.10	우호협력
	중국	상해시	2003. 4.17	우호협력
	중국	산둥성 운남성	2006.11. 2 2009.10.28	우호협력 우호협력
전주시 (4개국 7개도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	1983. 5.20	자매결연
	중국	강소성 소주시	1996. 3.21	자매결연
	일본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	2002. 4.30	우호협력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	2004.12.20	우호협력
	중국	요녕성 심양시	2006. 7.17	우호협력
	중국	길림성 장춘시	2006. 7.18	우호협력
군산시 (4개국 11개도시)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렌체시	2007. 3.28	우호협력
	중국	강소성 곤산시	1997. 9.10	우호협력
	미국	워싱턴주 타고마시	1979. 2.19	자매결연
	중국	산둥성 연대시	1994.11. 3	자매결연
	중국	요녕성 심양시	2003. 7.17	우호협력
	중국	산둥성 청도시	2003. 9.21	우호협력
	중국	정강성 부양시	2003. 9.25	우호협력
	중국	광소성 북해시	2003.10.27	우호협력
	인도	마하스트라주 펴프리시	2004. 8.22	자매결연
	인도	자하르칸드주 잠셋푸르시	2004. 8.23	자매결연
익산시 (4개국 4개도시)	캐나다	원저시	2005. 6.20	자매결연
	중국	강소성 강음시	2008. 4.18	우호협력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	1983. 9.12	자매결연
	덴마크	오덴시	1984.11.21	자매결연
정읍시 (2개국 2개도시)	중국	강소성 진강시	1998.10.19	자매결연
	일본	이타현 분고노시	2005. 8.22	우호협력
	중국	강소성 서주시	2000. 9.27	자매결연
	일본	지바현 나리다시	2002. 1.29	우호협력

구분	국가명	도시명	결연일자	비고
남원시 (2개국 3개도시)	중국	강소성 영성시	1996. 6.13	자매결연
	중국	연변자치구 연길시	2005. 9.2	우호협력
	이탈리아	베로나시	2008.10.15	우호협력
김제시 (2개국 2개도시)	일본	쿠마모토현 기쿠치	1985. 4. 1	우호협력
	중국	강소성 남통시	1997.10.22	자매결연
완주군 (2개국 3개도시)	미국	리포니아주 칼슨시	1997.10. 6	우호협력
	중국	강소성 회안시	1999. 4.22	자매결연
	중국	호북성 심원시	2005. 8.31	우호협력
진안군(1개국 1개도시)	중국	요녕성 본계시	2008. 1.25	자매결연
무주군(1개국 1개도시)	중국	하남성 등봉시	2005. 9. 7	자매결연
임실군 (2개국 2개도시)	미국	미네소타주 와세카시	1999. 6.22	자매결연
	중국	요녕성 청원현	1997.11. 4	우호협력
순창군(1개국 1개도시)	일본	가고시마현 미나마키슈시	2003. 4.15	우호협력
고창군(1개국 1개도시)	중국	산둥성 조장시	2005.10.24	우호협력
부안군(1개국 1개도시)	중국	충경시 우룡현	2009. 8.25	우호협력
계	도(8), 시군(39)	중국(260),일본(7), 미국(8), 이태리(2), 덴마크(1),인도(2),캐나다(1)		

3. 인물

- 전북지역을 빛낸 인물은 인물의 생애와 정신을 해석하는 시각 등 선정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전북지역 출신이면서 현재에도 전북에 거주하고 도민과 전북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하여금 전북이 낳은 인물을 발굴케 하고 선양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도외 지역 방문객 및 도외출신 전북거주 도민으로 하여금 지역적 자부심을 제고하는 효과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임
 - 이를 통해 도내 14개 시·군 출신이면서 자랑스러운 인물에 대해 재조명하고 인물박물관, 유품전시관, 문화계승관 등을 명예도로 주변에 설치하여 클러스터하므로써 지역문화자원으로 활용 가능
 - 전북을 빛낸 인물(또는 시·군을 빛낸 인물)을 선정하여 정치, 애국항쟁, 역사문화, 종교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고인이 된 자랑스러운 전북인을 선정하여 인명을 명예도로 명칭화 하기 위한 사업임
- 전북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족적을 평가한 언론기관 등 ‘전북인물’을 참조하여 분야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0〉 전북인물 예시

분야	인물	비고(출신지역)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
애국항쟁	김인전, 박준승, 백정기, 이석용, 임병찬	백정기(부안군 주산면)
법조 및 종교	김병로, 강일순, 박연세, 박중빈, 박한영, 백용성, 함태영	김병로(순창군 북흥면)
학 문	전 우, 최병심, 이 기, 이정직	-
문학 및 예술	신석정, 이병기, 김소희, 송성용, 신래동, 정정렬, 황욱	-
정 치	김성수, 윤제술, 백관수	김성수(고창군 부안면)

제5장

명예도로 지정 및 효과 제고 방안

1. 명예도로 지정방안

- 명예도로 지정은 기업유치 차원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사업 전개 일환사업으로 추진 필요
-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명예도로명 지정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른 기준에 의해 설정할 때 지역여건이 감안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지역내 입주 기업의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시·군 기초자치단체 여건에 적절한 기업, 인물, 자매결연 도시를 선정할 필요 있음
 - 이와 같은 제안은 시·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명예도로명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규모와 전략산업 분야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정을 염두에 둔 제안임
- 앞서 제시된 전라북도 명예도로 지정가능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명, 자매결연 도시, 인물 등을 중심으로 지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기업명칭을 사용한 명예도로 지정(안)
 - 군산시 : 현대중공업 조선로 • 군산시 : OCI로 • 익산시 : 벅솔론로 • 임실군 : 임실치즈로, 일진로
- 자매결연 도시명 사용 명예도로 지정(안)
 - 군산시 : 인도 타타로
(인도 잠셋푸르시-인도타타그룹이 대우상용차 인수로 마하스트라주 펄프리 친치드와시 요청으로 자매결연도시 체결)
: 주변에 인도 민속품 등 기념품 KIOSK설치 등 세계의 거리 조성 일환으로 추진(타 외국 기업명칭을 사용한 명예도로 지정과 연계)
 - 무주군 : 소림사로(태권도로와 함께 방문객 주 동선도로에 지정)
: 무주군 자매결연 도시(등봉시가 소림무술의 본고장이라는 점) 이미지 아이덴티티 제고를 위해 태권도공원 주변 도로에 명예도로 지정
: 추가적으로 태권도공원 직접 연계되는 도로에 태권도로 지정도 동시 고려
: 무주 ‘반딧불이’ 축제시기, 무주군민의 날 또는 등봉시민의 날에 거행되는 행사아이템에 태권도, 소림무술 등의 시범공연 포함
- 전북(시·군)을 빛낸 인물의 명예도로 지정(안)
 - 군산시 : 호남 의병장 임병찬(옥구읍) - 호남 의병장로, 의병 임병찬로
 - 김제시 : 부통령 함태영(진봉면 정당리) - 함태영로

- 순창군 : 한국 사법의 화신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북흥면) - 김병로로
- 고창군 : 현대사의 거인 김성수(부안면) - 김성수로

2. 효과 제고방안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규 투자 대기업(투자규모 내지 고용규모 기준)을 중심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 입주기업의 경우도 동일선상에서 고려가 필요함
- 전북지역 입주기업이 전북 내지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 입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정도를 시(군)민에게 인지케 하므로써 시(군)민에게는 우호적인 기업이미지를 갖게 하고, 해당 기업에게는 투자기업의 정착은 물론 후속 투자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
- 명예도로는 방문객에게는 하나의 기업홍보관이자 인물 전시관과 같은 문화시설 기능을 수행함
 - 기업명칭을 명예도로명으로 사용할 경우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의 홍보관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이 낯은 인물을 명예도로명으로 사용할 경우 인물의 유품을 전시하는 유물관이나 생가터를 방문한 듯한 기념비적인 느낌을 갖게 하여 문화시설 기능을 수행함
 - 아울러 직접적인 문화시설 기능의 수행 방안으로 명예도로변에 키오스크(koisk)를 설치하여 자매결연 외국 도시 거리조성, 기업 내지 인물 관련 제품전시장, 유품전시관 내지 기념품 판매코너를 설치할 경우 실질적인 포켓(주머니)문화공간(pocket space, small street furniture)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업 창립일, 인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를 년중 정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상징거리로서의 효과도 제고 가능함
 - 독립투사의 거리, 외국(세계) 문화예술의 거리 등
- 경기도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접근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던 지역내 기업의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 바 있는 기업진입로 개설사업 등에 대해 검토
 - 이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기업하기 좋은 전북 도로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전라북도 및 시·군이 매칭하여 진입도로 개설 또는 개선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SOC 부문이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전라북도 자주재원 여건상 도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소요재원 예측과 효과 등에 대해 면밀한 진단 등을 실시한 후 추진 여부 결정

3. 쟁점

- 인접 기초(광역)지자체간 협력과 중재 및 갈등 해소 필요
 - 예) '박지성로'의 사례에서처럼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도로명을 수원시는 '지성로', 화성시는 '센트럴파크로'로 사용주장. '경기도 새주소위원회'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연속된 도로명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므로 통일된 명칭 사용권고. 단, 정부의 방침이 생존인물의 이름을 딴 도로명은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예비도로로 사용키로 함

- 명예도로명 신규 지정시 기존 입주기업과 신규 입주기업간 형평성 유지와 차등방안 동시 마련 필요
- 명예도로명 지정에 적절한 시기 고려
 - 입주기업에 대한 유인 인센티브로 활용하되, MOU 체결 등 당초 투자약속 단계보다는 입주 후 투자 공정 진행 수준을 관망하면서 지정토록 함
 - 다만,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전라북도 투자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른 심의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준용할 경우 사업추진 공정을 고려. 3단계에 명예도로로 지정을 위한 준비와 실행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예)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전라북도)
 - 1단계 : 도내 투자예정 업체와 투자협약(MOU)체결시 - 10%지급
 - 2단계 : 공장 착공후 공정율이 30%이상 달성 - 30%지급
 - 3단계 : 공장건설 완료후 정상 가동시 - 60%지급
- 명예도로로 표지판은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시도되고 접근되어야 함
 - 명예도로로 표지판은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전라북도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한 통일된 동일한 의미를 담은 통일된 디자인 양식을 사용토록 함
- 각 부문별 명예도로 지정을 위한 효과진단 실시 및 적극적 홍보방안(진입도로 개설과 그 외 인프라) 도입 가능성 진단 필요
 - 명예도로로 지정효과를 수요자와 공급자(기업, 시·군민, 시·군청 등) 중심으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 실시 필요
 - 기업 입주시 전북도 및 시·군차원에서 제공하는 기업이전 인센티브와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진입도로 등 인프라 부문을 망라하여 가장 높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부문(현재의 인센티브와 기타 인프라 구비 등 전북이전 기업의 희망 및 애로사항 조사 등)선정 등 분석 및 정책반영

4. 소요예산

- 명예도로로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경비는 표지판 제작 소요경비 외에 크게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상 재원측면의 문제점은 거의 없음
- 명예도로로 지정과 관련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표지판 제작비용은 명예도로 1개소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표지판사업비(제작비, 운송비, 프레임 제작, 현장설치, 인건비 등) : 명예도로 1개소당 1,000만원(200만원/개당 * 5개/개소)
- 현재의 기업이전 인센티브 제공외에 별도의 진입도로 등 인센티브 지원시 추가예산 발생